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119
----------	--------

제출년월일 : 2023.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 변경(안 제1조)

나. 공유재산관리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 제3조)

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 신설(안 제4조)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마.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단순 재기재 등 중복조항 삭제(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 정비(안 제2조, 제9조, 제10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8. 17. ~ 9. 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를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를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운용에 관한”을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심의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을 “본인”으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호) 중 “임무”를 “그 밖에 위원이 임무”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불참”을 “장기불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과 관련한 수입금을 재원으로</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 ----- - <u>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u> ----- -----.</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p>

조성한다. 다만, 행정재산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을 포함한다.

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에 필요한 취득비
2.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해당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 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 신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 마포구의회 의원 -----  
-----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⑥ (생략)

⑦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심의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  
----- 민  
간전문가

⑥ (현행과 같음)

⑦ ----- 위촉직 -----  
-----  
-----  
----- 하되 한 차례만 -----  
-----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 임기-----  
-----.

⑧ ----- 본인-----  
-----  
-----  
-----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  
-----.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5. 그 밖에 위원이 임무-----  
경우

2. ----- 장기불참 등  
-----  
-----

3.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공유재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 재정관리국 재무과 호민정 (☎ 3153-8605)